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8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2016.9.29.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조직 개편, 시설 신규 설치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조례에 반영
  - 시설의 위탁 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 선정절차 등 규정
- 나. 복지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 주관부서 변경
  - 노인복지관(어르신복지과 → 인생이모작지원과)
- 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전환 및 신규 설치에 따른 현행화
  - 복지본부 소관 노숙인 복지시설 시립시설로 전환(쪽방상담소)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신설(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 라. 시립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아동복지법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 완료(신설·강화 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 완료(비상설위원회의 자동해지 및 임기에 관한 규정)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 완료(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첨부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9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탁자 선정심의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재위탁, 재계약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제목“(시설관리 등)”을“(지도·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법인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겸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겸재로61길 81 (망우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 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 시립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물판매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재활시설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 업시설 ◦ 번동보호작업장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3프로농장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107 번길 14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시립곰두리체육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 동)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상계동)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남가좌 동)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발달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시립은평의마을 ◦ 시립양평쉼터 ◦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 시립영등포보현의집 ◦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 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 가)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종로구 수표로22길 22 (돈의동) 종로구 종로50라길 31 (창신동) 용산구 한강대로 379 (동자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li> <li>◦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li> </ul>	<p>용산구 후암로57길 37 (동자동)</p> <p>영등포구 경인로 823-2 (영등포동 4가)</p>	<p>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p> <p>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p>
<p>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영보정신요양원</li> <li>◦ 시립은혜로운집</li> <li>◦ 누리봄</li> <li>◦ 새오름터</li> <li>◦ 늘푸른집</li> <li>◦ 이음</li> <li>◦ 동작아이존</li> </ul>	<p>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p> <p>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p> <p>광진구 용마산로25길 10 (중곡동)</p> <p>은평구 연서로22길 4 (대조동)</p> <p>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p> <p>강동구 천호옛12길 24-15(성내동)</p> <p>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p>	<p>정신질환자 보호</p> <p>정신질환자 보호</p> <p>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p> <p>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p> <p>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p> <p>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p> <p>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p> <p>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p>



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서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9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탁자 선

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재위탁, 재계약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신 설>

<신 설>

제8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를 취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

<신 설>

제9조 (생 략)

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  
간이 종료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법인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  
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  
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에 따라 시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위원 회의참석 수당, 운영비 등이 발생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 제1항 제1호

### <관련규정>

제3조 ①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시립시설 위탁 만료시 또는 신규 시립시설 위탁시에 개최되는 비상설위원회이며,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원 수를 감안하여 비용 추계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 미만에 해당함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비용 추계>

·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수 : 9명(공무원 포함)

· 시립사회복지시설 수 : 83개

⇒ 시립사회복지시설이 한 해에 위수탁을 일제히 갱신하는 경우(최대비용소요 가정 시)

150,000원 × 83개 × 9명 = 112,050천원

##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행정6급, 김분년 주무관(T.2133-7334)